

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

제정	1981.	7.	1	훈령 제28-1호	
개정	1983.	5.	2	훈령 제 36호	
	1984.	4.	19	훈령 제 52호	
	1987.	8.	4	훈령 제 63호	
	1990.	5.	15	훈령 제 84호	
	1996.	10.	19	훈령 제 164호	
	1999.	12.	17	훈령 제 202호	
	2004.	10.	4	훈령 제 245호	
	2008.	6.	16	훈령 제 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	
일부개정	2011.	3.	10	훈령 제 301호	
일부개정	2012.	8.	30	훈령 제 31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3.	8.	1	훈령 제 329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3.	12.	12	훈령 제 335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4.	8.	14	훈령 제 338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5.	5.	28	훈령 제 351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6.	12.	29	훈령 제 382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8.	2.	2	훈령 제 394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18.	5.	31	훈령 제 397호	
일부개정	2019.	6.	25	훈령 제 406호(동 사무전결 사항 규정)	
일부개정	2019.	12.	20	훈령 제 411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20.	12.	22	훈령 제 416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21.	6.	10	훈령 제 420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일부개정	2023.	10.	10	훈령 제 439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및 「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」에 의하여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·평시 군·경·관·민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등 각종 방위요소의 통합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적의 침투·도발·위협 및 우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9. 12. 17, 2008. 6. 16>

제2조(설치) 지원본부는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협의회 안에 설치한다. <개정 99. 12. 17>

제3조(구성) ①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장, 종합상황실, 군·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,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, 동에는 동장이 된다.

③ 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, 반원 및 분야별 지원반의 대표로 구성한다.

④ 군·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군·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장과 군·경 정

보 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육군 제2506부대 2대대 작전장교 또는 광명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며 운용책임은 다음과 같다.

1. 평시: 광명경찰서장

2. 사태발생시: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

⑤ 분야별 지원본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지원본부구성: 별표 1 참조

2. 동 지원본부구성: 별표 2 참조

⑥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으로 구성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⑦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내 제요소가 공동참여하며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.

제4조(통제)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무) 지원본부 구성 및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〈개정 99. 12. 17, 2011. 3. 10〉

1. 지원본부

가. 통합작전 및 각종 우발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.

나. 국가동원업무의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조정·통제·지원한다.

다. 민방위사태를 지원한다.

라. 향토예비군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.

마. 기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.

2. 지원본부장

가.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

나.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

다.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를 지휘 감독

라. 각 분야별 지원반 업무의 협조 및 조정·통제

마.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

- 바. 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즉시 지원태세를 유지
 - 사.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관리
3. 종합상황실
- 가.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
 - 나.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
 - 다.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지시
 - 라.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
 - 마.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지휘 감독
 - 바.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조정·통제
 - 사. 군·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
 - 아.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·경 합동상황실에 통보
 - 자. 충무 3중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
4. 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
- 가. 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업무를 관장
 - 나. 신속·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
 - 다. 군·경 작전상황 종합분석·판단·건의 및 조치
 - 라.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,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
 - 마. 군 및 경찰작전 상황의 종합상황실 통보 및 협조
 - 바. 주민신고 업무를 관장
 - 사.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·통제 및 건의
5. 총괄지원반
- 가.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
 - 나.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
6. 인력·재정 동원 지원반
- 가.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
 - 나. 예비군·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
 - 다. 실비변상 및 가료, 구호 소요량 파악

- 라.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
 - 마.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
 - 바. 주민통제 업무 관장
 - 사.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
 - 아.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
 - 자.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
7. 산업·수송·장비 동원 지원반
- 가. 산업·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 지원업무 관장
 - 나.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
 - 다. 실비변상 및 회수·반환업무 관장
 - 라.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·지원
 - 마.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업무 관장
 - 바. 차량통제
8. 의료·구호지원반
- 가.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
 - 나. 의료·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·통제
 - 다.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
 - 라.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
 - 마.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
 - 바.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가료비 지원업무 수행
9. 통신·전산 지원반
- 가.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
 - 나.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·운용
 - 다.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
 - 라. 통신지원조 편성·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·복구
 - 마. 국가동원계획에 의한 통신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

- 바. 관·군·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
- 10. 보급·급식 지원반
 - 가.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 관장(별표 3참조)
 - 나.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지원
 - 다.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·수산물자 동원집행 준비
- 11. 홍보지원반
 - 가. 홍보 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
 - 나. 홍보매개체 조성·통제 및 홍보반 편성 운영
 - 다. 국가동원계획에 의한 홍보매체 동원집행
 - 라.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
- 12. 삭제 <2011. 3. 10>

제6조(직무)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부장: 지원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한다.
2. 종합상황실장: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 부재시 본부장을 대행한다.
3. 지원반장: 지원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시에는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지원반원: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근무)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운용한다.

제8조(회의소집) ① 지원본부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군부대 합동훈련시 또는 방위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지원본부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요원 전원 및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

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10. 19 훈령 제164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12. 17 훈령 제202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10. 4 훈령 제245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3. 10 훈령 제301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8. 30 훈령 제317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하고 “기획예산과장”과 “정책비전팀장”, “기획팀장”, “위생관리팀장”을 삭제하며,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재난관리과장”으로, “재난하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, “생활경제과장”을 “기업경제과장”으로, “민간협력팀장”을 “재난시설팀장”으로, “농축정팀장”을 “도시농업팀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3. 8. 1 훈령 제329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종합상황실 실장란의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

고, 총괄지원반 반장란의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한다.

⑤ 및 ⑥ 생략

부칙 <2013. 12. 12 훈령 제335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중 “재난안전팀장”을 “안전총괄팀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4. 8. 14 훈령 제338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규정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중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을 “시민안전국장”으로, “경제유통팀장”을 “지역경제팀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5. 5. 28 훈령 제351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산업·수송·장비 동원 지원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산업·수송·장비 동원지원반	
반장	· 광역도로과장
반원	· 건축행정팀장 · 행정지원팀장 · 도로시설팀장 · 교통대책팀장 · 교통체계개선팀장

부칙 <2016. 12. 29 훈령 제382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행정지원팀장”을 “도로행정팀장”으로, “교통체계개선팀장”을 “교통시설팀장”으로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시민보건과장”으로, “예방의약팀장”을 “의약무팀장”으로, “문화팀장”을 “문화중무팀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8. 2. 2 훈령 제394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산업·수송·장비 동원지원반란의 “광역도로과장”를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8. 5. 31 훈령 제397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6. 25 훈령 제406호, 동 사무전결 사항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괄 지원반의 “사무장”을 “행정팀장”으로 한다.

⑤ 생략

부칙 <2019. 12. 20 훈령 제411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 행		개 정 안	
의료·구호 지원반	홍보과장	의료·구호 지원반	홍보과장
반장·시민보건과장	반장·홍보실장	반장·보건행정과장	반장·홍보담당관

⑥ 부터 ⑪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12. 22 훈령 제416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 1]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

현 행	개 정 안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료·구호 지원반</td> </tr> <tr> <td>반장·보건행정과장</td> </tr> </table>	의료·구호 지원반	반장·보건행정과장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료·구호 지원반</td> </tr> <tr> <td>반장·감염병관리과장</td> </tr> </table>	의료·구호 지원반	반장·감염병관리과장
의료·구호 지원반					
반장·보건행정과장					
의료·구호 지원반					
반장·감염병관리과장					

부칙 <2021. 6. 10 훈령 제420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‘지역경제과장’을 ‘기업지원과장’으로 한다.

③ 생략

부칙 <2023. 10. 10 훈령 제439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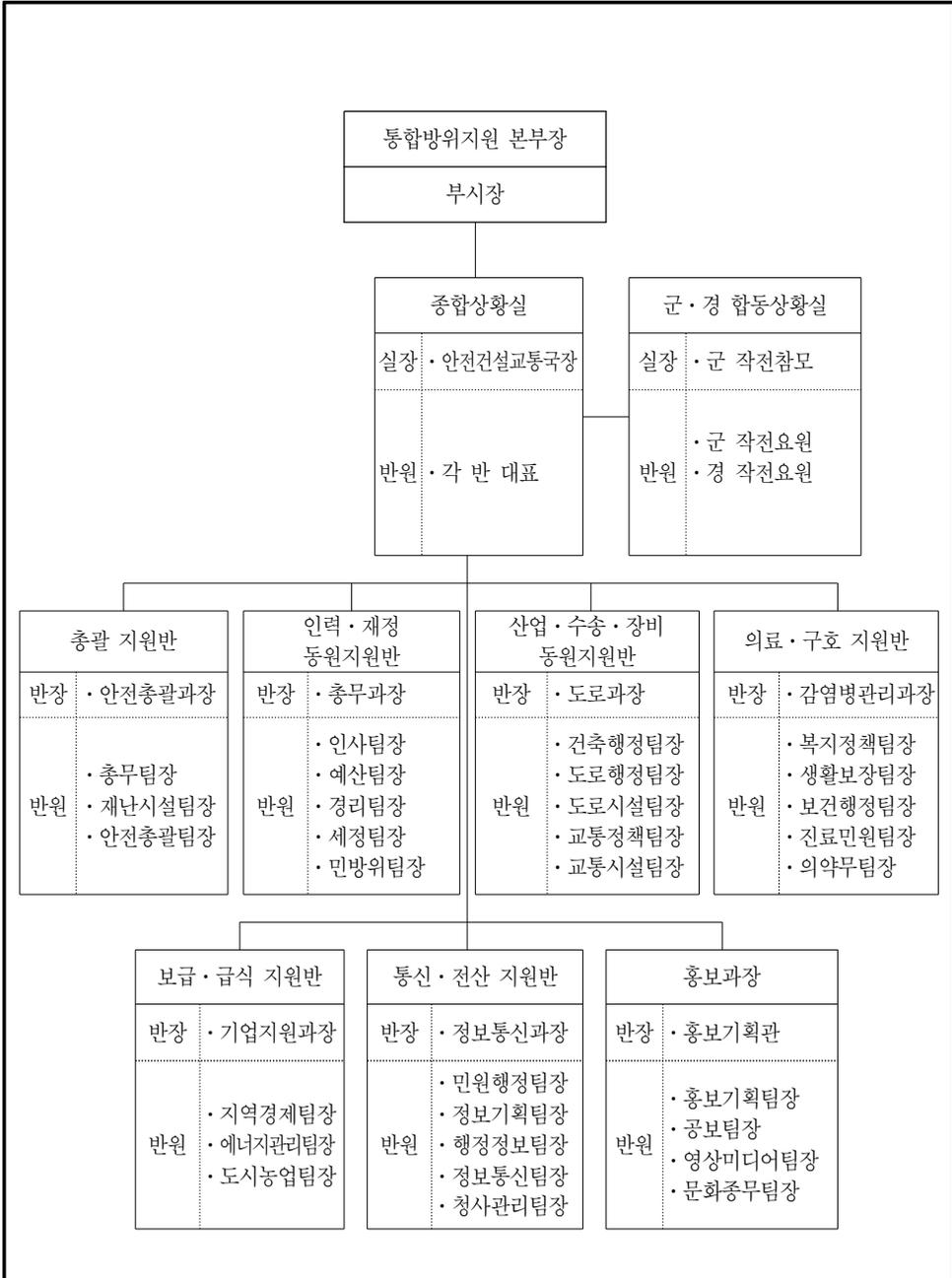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

- 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중 반장란의 “홍보담당관”을 “홍보기획관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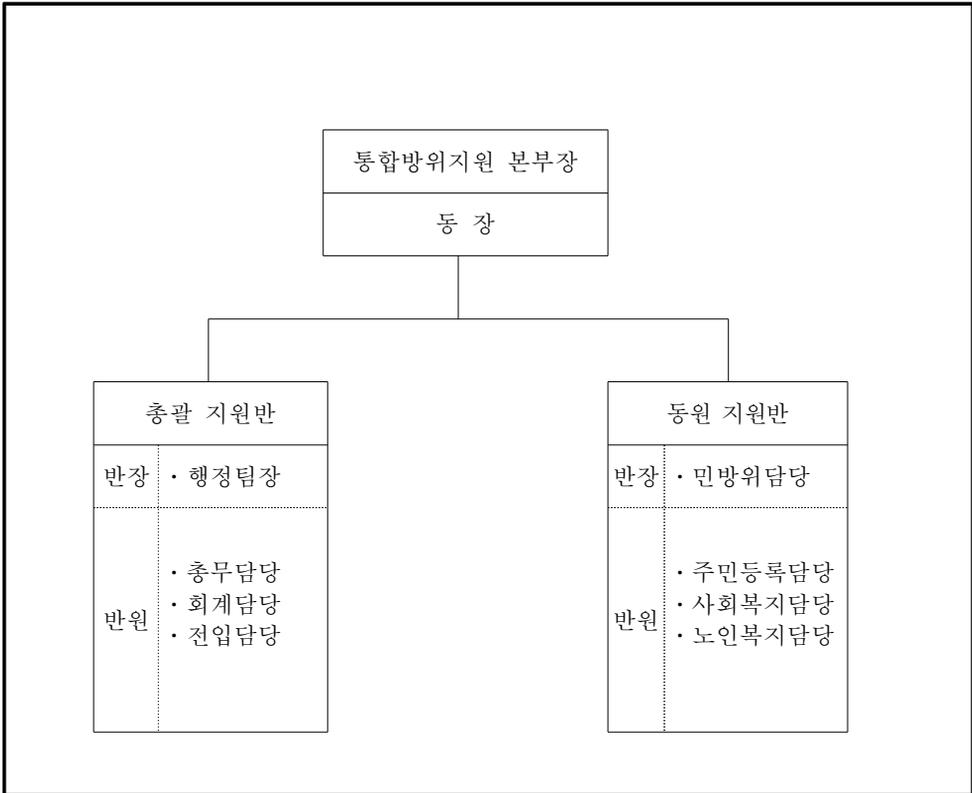
[별표 1] <개정 2023. 10. 10>

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



[별표 2] <개정 2019. 6. 25>

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



[별표 3]

작전동원병력 급식지원 절차

